

제6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

주주님의 건승과 덕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우리회사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제6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※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■ 아 래 ■

1.일 시 : 2022년 3월 28일 (월) 오전 11시

2.장 소 : 경남 양산시 충렬로 355 넥센타이어주식회사 본사 강당

3.회의목적사항

<보고안건> 감사보고, 영업보고,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

<부의안건>

제1호 의안 : 제64기(2021년 1월 1일 ~ 2021년 12월31일)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

제2호 의안 : 이익잉여금처분(안) 승인의 건

제3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(※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)

제4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

- 제4-1호 의안 : 사내이사 강호찬 선임의 건

성 명	생년월일	주요약력	추천인	최대주주와의관계	회사와의거래내역	비 고
강 호 찬	1971년10월30일	現, 넥센타이어(주) 대표이사 現, (주)넥센 대표이사	이사회	최대주주	최대주주	중 임

- 제4-2호 의안 : 사내이사 이현중 선임의 건

성 명	생년월일	주요약력	추천인	최대주주와의관계	회사와의거래내역	비 고
이 현 중	1962년07월25일	現, 넥센타이어(주) 사장	이사회	해당없음	해당없음	신규선임

- 제4-3호 의안 : 사외이사 황각규 선임의 건

성 명	생년월일	주요약력	추천인	최대주주와의관계	회사와의거래내역	비 고
황 각 규	1955년04월28일	前,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	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	해당없음	해당없음	신규선임

- 제4-4호 의안 : 사외이사 홍윙택 선임의 건

성 명	생년월일	주요약력	추천인	최대주주와의관계	회사와의거래내역	비 고
홍 윙 택	1971년10월30일	現,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	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	해당없음	해당없음	신규선임

제5호 의안 :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

- 제5-1호 의안 : 감사위원회 위원 황각규 선임의 건

성 명	생년월일	주요약력	추천인	사외이사 후보자여부	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	비 고
황 각 규	1955년04월28일	前,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	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	사외이사후보자	해당없음	신규선임

- 제5-2호 의안 : 감사위원회 위원 홍용택 선임의 건

성 명	생년월일	주요약력	추천인	사외이사 후보자여부	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	비 고
홍 용 택	1971년10월30일	現,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	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	사외이사후보자	해당없음	신규선임

제6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
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회사의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2022년 3월 11일

 **넥센타이어주식회사** 

대 표 이 사 강 호 찬 (직인생략)

붙임 : 제3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현 행 (변경 전)	개 정 (변경 후)
제17조의2 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	제17조의 2 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(좌동) 다만,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제30조 (이사의 수) ① 이 회사는 3명 이상 6명 이내로 하고,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. ② (생략)	제30조 (이사의 수) ① 이 회사는 3명 이상 <u>9명</u> 이내로 하고,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<u>과반수</u> 로 한다.
제43조 (감사위원회의 구성) ① ~ ⑥ (생략)	제 10 조의 2(주식매수선택권) ① ~ ③ (현행과 동일) ④ <u>감사위원회</u>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 본 항에 따라 분리선임한감사위원회 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. ⑦ <u>감사위원회</u>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으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. 기존 ④⑤⑥항은 각각⑤⑥⑧로 변경
부 칙 (시행일) 이 정관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(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1년 3월 26일)부터 시행한다.	부 칙 (시행일) 이 정관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(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2년 3월 28일)부터 시행한다.